

#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55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영실 의원)

#### 1. 제안이유

- 가.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 건강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노인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그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노인건강증진 사업 수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사.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 「노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제정안의 취지

-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 건강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되었음.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정의 조항과 관련하여

- 제정안은 노인의 정의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사업 및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노인의 정의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건강증진의 경우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제2조제1호<sup>1)</sup>에 따른 건강증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관련 공무원 등의 정의는 시 또는 자치구 소속의 노인대상 건강

1) 「국민건강증진법」의 제2조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관련 공무원 등’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현재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보건소나 주민센터 소속의 공무원 외에도 공무원(민간인)인 경우가 있어 관련 공무원 외의 대상을 본 조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보임.

#### 나. 시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 동 조례 제정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최근 건강 및 복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임.
- 관련하여 제정안 제3조제2항은 노인건강증진사업을 구청장과 협업하여 개발하고 동 단위 지역에 적용하도록 지원하거나, 노인의 자발적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업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임. 이를 위한 노인건강증진사업은 노인건강행태 및 위험요인의 평가와 이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심리적 지원, 노인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이 이에 포함

됨.

- 또한 제정안 제5조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는 노인 건강증진관련 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7조에는 노인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구 단위, 동 단위 소규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자치구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 노인건강증진사업 실태

- 서울시는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 방문간호사를 운영 중에 있음.

세부지표	'18년	'19년
65세 이상 방문건수(건)	801,906	900,000
지역자원 연계(건)	357,218	360,000
어르신 방문간호사 인력 (명)	397	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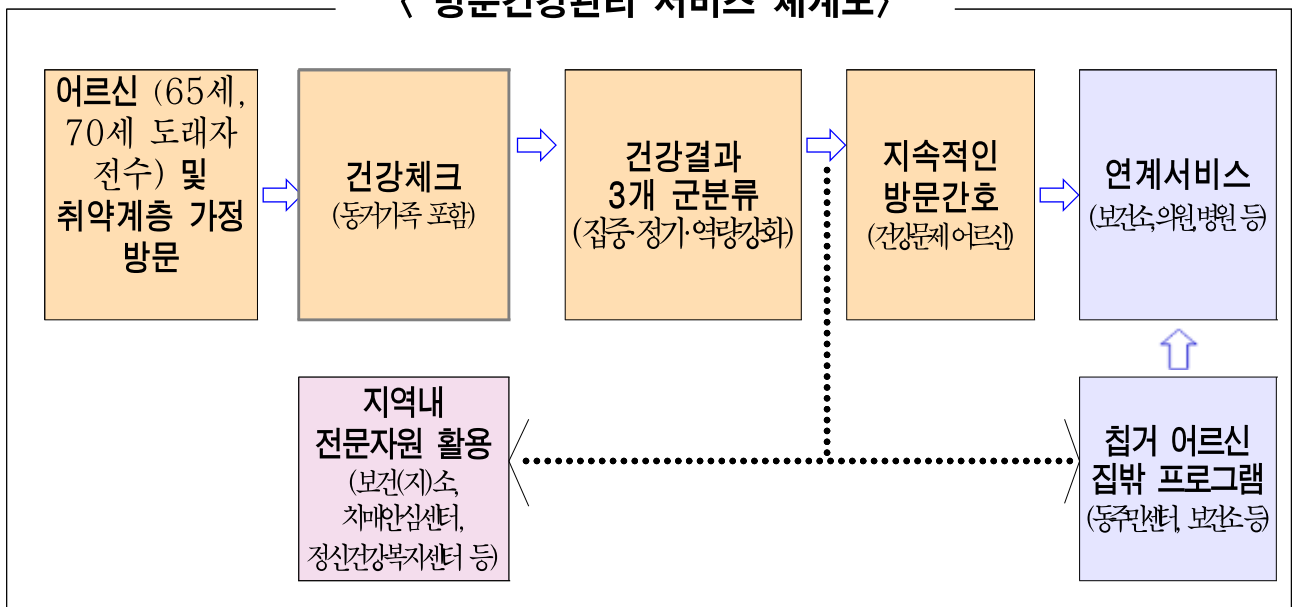
- 현재 서울시가 방침<sup>2)</sup>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 대상방문간호는 65세와 7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한 전수방문을 하고 있는바

2)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24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노인복지법 제4조 등도 근거라고 할 수 있으나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방침임.

제정안은 이를 명시하여 사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 방문간호 서비스는 기초 건강조사표, 65세 이상 건강면접조사표, 건강행태 및 주관적 건강, 식생활, 만성질환 이환조사, 우울-자살관련 검사, 치매선별검사,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핵 및 호흡기 질환 검사 등을 실시하고 건강에 대한 위험정도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이 제안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또는 같다고 볼 수 있음.

###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체계도 〉



- 아래의 표는 이를 통해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군별 분류표와 서비스 제공 횟수와 내용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
대상자 특성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되는 경우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가 있으나 위험 범위에서 조절되는 경우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가 있으나 정상 범위로 조절되는 경우
방문횟수	8회 / 3개월 이내	1회 / 3개월	1회 / 6개월
내 용	보건소 내·외 보건의료 자원 연계 (보건(지)소, 치매안심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돌봄SOS센터 등)	보건(지)소 건강프로그램 연계, 주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활동 지원(소모임프로그램, 건강생태계 연계 등)	주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활동 지원(소모임프로그램, 건강생태계 연계 등)

- 집행부가 노인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간호관련 공무원 등의 인력부족과 처우개선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앞으로 동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부가 1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현재 집행부는 아래와 같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예산의 확보 어려움 및 자치구 소속의 공무원 등(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일괄적인 정비가 요청된다 할 것임.

신규 방문간호사 간호직 공무원 총원 및 인건비 지원

- (자치구) 행안부 기준인건비 증액에 따른 공무원 정원확보
- (서울시) 정원 확보된 자치구 인건비(시비75% 정액) 지원

기존 방문간호사(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지속적 노력

- 전문 의료인으로서 인정받도록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임금체계 재설계
- 현장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방문간호사 처우개선 의견 수렴 추진

## 4 종합의견

- 제정안은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노인의 건강관리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집행부가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체계의 구축과 사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인력관리 업무분장 등과 관련한 노무 문제에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55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이영실, 김화숙, 강동길,  
김혜련, 최 선, 김경우,  
이정인, 봉양순, 우형찬,  
임종국, 권영희, 권순선,  
김제리, 이병도, 이호대,  
김정태, 채유미, 김소양,  
김용연, 김동식, 오현정,  
서윤기 의원 (22명)

##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 건강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노인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그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노인건강증진 사업 수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사.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2. “건강증진”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련 공무원 등”이란 시 또는 자치구 소속의 노인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증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동(洞) 단위 지역에 적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과 노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그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이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연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노인건강증진의 사업)** ① 시장은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노인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노인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평가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심리적 지원
4. 노인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5.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6.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노인의 허약예방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노인 건강증진관련 업무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역량강화)**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